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장 직무대리 규정 위반 시 징계〉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5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승원 · 한병도 · 강준현 · 민병덕 · 문대림 · 이광희
이건태 · 전용기 · 김용민 · 박선원 · 최혁진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 의안번호 : 1626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직무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12조의 직무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u>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2조¹⁾는 의장이 사고²⁾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

- 1)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사고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일체의 사고가 포함됨. 예를 들면 의장의 신상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또는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상의 사고이며, 신병 또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면담 또는 외빈 예방 등의 사유로 일시 의장석을 떠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사고라 할 것임(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72).

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부의장은 의사정리,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 등 의장의 직무³⁾를 대리하게 됨.

한편, 부의장이 직무대리 규정에 따른 의장의 직무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활할 의사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었음. 일례로 장기간 무제한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게 되면 사회를 보는 의장에게 물리적·체력적 부담을 주고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음.⁴⁾

이에 개정안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의원 징계는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제재하는 것으로,⁵⁾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4조제2항⁶⁾에 따라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제155조는 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의무 위반, ② 국회관계법상 각종 의무 위반, ③ 「공직자윤리법」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④ 「국회의원윤리강

3)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4)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2025. 12. 23.) pp.219~220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686

6)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의원의 징계 사유⁷⁾로 열거하고 있음.

즉, 의원 징계제도의 취지·목적과 현행 「국회법」상 징계 사유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 위반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무제한토론 시 의장·부의장의 장시간에 걸친 사회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⁸⁾이 최근 공포·시행(2026. 2.

7) 현행법상 징계 사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의무 위반②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③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위반④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의무 위반⑤ 「국회법」상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⑥ 「국회법」상 이해충돌 우려 안건 등 회피의무 위반⑦ 「국회법」상 정보위원회 위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⑧ 「국회법」상 의제 외 발언 금지의무 위반⑨ 「국회법」상 비공개 회의록 열람 등 금지의무 위반⑩ 「국회법」상 비공개 회의내용 공표 금지의무 위반⑪ 「국회법」상 회의의 질서 유지의무 위반⑫ 「국회법」상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 위반⑬ 「국회법」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 위반⑭ 「국회법」상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의무 위반⑮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출석요구서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⑯ 탄핵소추사건 조사 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 해당⑱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 사유 해당⑲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⑳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
|--|

8)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된 무제한토론(2026. 2. 24.)에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봄.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10.)되었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무제한토론 진행을 거부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